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중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89
----------	-------

발의연월일 : 2026. 3. 23.

발 의 자 : 진중오 · 서천호 · 고동진
엄태영 · 김상훈 · 이만희
최형두 · 김용태 · 정동만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장착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는 경미한 사고라도 내부 구조에 미세 균열이 생겨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인 만큼 기능을 상실한 사고 카시트가 재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게 된 카시트가 판매 또는 장착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카시트가 시중에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유아보호용 장구가 판매 또는 장착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장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유아보호용 장구가 판매 또는 장착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장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u>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